

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4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10월 1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“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”는 발달 지연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맞춤 치료 지원, 연계 등을 통해 영유아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.
- 나. “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”는 전문성, 경험, 인적·물적 자원 등이 축적된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발달 지연 아동과 그 가정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
- 나. 위탁유형 : 사무위탁
- 다. 위탁기간 : 3년(2023. 3 ~ 2026. 2)

라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(사무의 위탁)

○ 추진 필요성

- “서울아이 발달지원 센터”는 민간의 전문 지식과 특화된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, 특히 영유아 발달관련 검사 및 치료 경험이 있는 인력이 운영하는 민간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마. 위탁사무

-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
-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
-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·정보제공 지원사업
-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·심리 지원사업
-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

바. 위탁사무 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10, 2층
- 규모 : 전용면적 약 300 m^2
- 시설현황 : 상담실, 검사실, 대기실, 교육실, 사무실 등
- 인력현황 : 16명
 - 센터장 1, 발달 검사 및 상담인력 13, 행정 인력 2

사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신규 민간위탁(공개모집)

아. '23년 소요예산(안) : 1,500백만원

○ 예산과목 : 민간위탁금, 민간위탁사업비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, 제9조

제8조(지원사업)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
2.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
3.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·정보제공 지원사업
4.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·심리 지원사업
5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

제9조(사무의 위탁)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제1항 제3호, 제6조 제1호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예산반영 예정

다. 합 의

○ '22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: 조건부 적정('22.9.8)

○ '22년 제6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후속조치 심의 : 적정('22.10.5)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영유아담당관 영유아지원팀 노은정(☎2133-5107)